■ 치과 칼럼

임프란트 (3)

임플란트는 뿌리 모양의 티타늄 나사인 픽스쳐(fixture) , 몸체 기둥인 어버트먼트(abutment) , 그리고 치아 모양인 크라운(crown)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픽스쳐를 치아 뼈에 식립한 후 보통 6 개월이 지난 후에 크라운을 씌우는데, 기둥에 크라운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첫 번째는 crp(cement retained prosthesis) 접착제 유지형입니다.

임플란트 위로 기둥을 연결하고 이 기둥 위로 붙일 임플란트 크라운에 접착제를 발라 연결 시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임플란트의 보철 모양이 자연 치아에 씌우는 크라운처럼 가장 깔끔하게 제작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임플란트 보철을 분리해야 할 시 크라운에 구멍을 뚫어 스크루를 찾아야 하거나 크라운을 절단하여 완전히 분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srp(screw retained prosthesis) 스크루 유지형 입니다.

임플란트 기둥과 임플란트 크라운이 하나로 연결되어 스크루로 유지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접착 방식에 의한 단점은 피할 수 있지만 임플란트 픽스쳐의 식립 각도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와 보철의 분리가 쉬워 보철 수정이나 수리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scrp(screw cement retained prosthesis) 혼합유지형 입니다.

스크루 유지형과 접착제 유지형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 크라운 종류입니다.

기둥을 연결한 후 임플란트 크라운을 구강 내에서 접착제로 연결 시키고 스크루를 풀어 주위의 삐져나온 접착제를 깨끗하게 제거해준 후 스크루로 다리 조율해줌으로써 srp 와 crp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rp처럼 스크루가 들어가는 홀이 뚫려 있기 때문에 온전히 장점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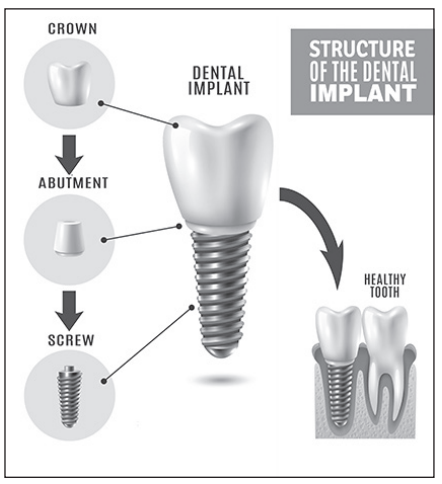

이렇게 각각 보철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픽스쳐의 식립 각도, 구강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그 종류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보철을 끼운 후엔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자연치아처럼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워터픽, 그리고 구강청정제로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치과에 내원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합니다.

음식도 좌우로 저작운동을 해야 하는 마른 오징어처럼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자연치아 처럼 잇몸뼈가 녹아내려 잇몸 염증을 초래하고, 심하게는 빼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을 빨리 발견해야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기에

정기적인 체크업이 중요합니다.

다음엔 자연치아에 쓰이는 보철의 종류와 틀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린다 치대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 법률 칼럼

미국 내에서 학생(F-1)으로 체류 신분 변경

미국 내에서 다른 비이민비자 상태로 체류하다가 F-1 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없거나 미국에서의 체류를 도와줄 수 있는 고용주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미국 내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일 것입니다.

학생비자는 1 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만 보여줄 수 있다면, 어드미션을 받은 학교의 I-20 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다른 비이민비자들에 비해 비교적 간단히 받을 수 있는 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민국에서 F-1으로 신분변경(COS: Change Of Status)을 하는 청원에 대해 기각을 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F-1 비자의 의도가 진정한 학구열(?)이라기 보다 미국 내에서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이용하고 있는 케이스들인 경우를 이민국이나 현정부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B-1/B-2 로 입국하여 6 개월의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시점 즈음에 '미국을 다녀보니 갑자기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부가 하고 싶어졌다……' 라는 F-1 COS 케이스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신분으로 비자를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I-20 에 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시작, 최대 30일 전까지 유효한 비자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2 가 3 월 31 일에 만료되고 새로운 학교 프로그램이 5 월 15 일에 시작한다면 두 기간 사이의 gap 이 30 일을 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F-1 으로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I-539 라는 이민국 form (for extend/change of status)을 제출하면서 B-2 를 연장하기 위한 I-539 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두 개의 다른 목적의 I-539 를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F1 신청은 기각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민국이 최근 확정한 'Bridge Application Policy' 를 통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Bridge application (위의 예에서 설명드렸던 B-2 연장을 위한 I-539)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RFE (Request for Evidence)를 통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 이미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I-539 를 filing fee 와 함께 그 때라도 제출하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 기각의 사유가 됩니다.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옵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민국이 특별히 심사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반드시 경험이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서 결정하기 바랍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